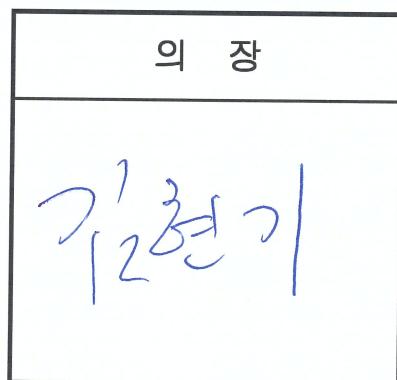


현장 속으로
시민곁으로

의원 발의 의안 접수 및 회부



11/30



2023. 11.

서울특별시의회
의사담당관

의원 발의 의안 접수 및 회부

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(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)에 따라
의안이 접수되었기에 관련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함.

회부의안 : 총 1건 (조례안 1)

연 번 (의안번호)	의 안 명	주 요 내 용	발의 · 제출	발의 · 제출일 (소관 상임위원회)
			(소관 상임위원회)	
1 (1480)	서울특별시 이에스지(ESG)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	<p>□ 서울특별시 산하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에 이에스지(ESG) 경영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며 지구환경 보호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.</p> <p>- 이에스지(ESG)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원칙과 중점관리 목표를 규정함 (안 제2조)</p> <p>- 이에스지(ESG) 경영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및 공공기관의 이행노력 의무를 규정함 (안 제7조)</p> <p>- 이에스지(ESG) 경영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지원 가능한 사업의 범위를 규정함 (안 제8조)</p>	김혜영 의원 외 32명 (기획경제)	2023. 11.29.

2023.11.30
의장

향후계획

-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(상임위원회 회부)에 따라 소관
상임위원회(기획경제위원회)에 의안 회부

붙임 : 관련 의안 1부. 끝.